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659호 2020. 4. 2.(목)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78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----- 1
- 사천시 고시 제79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-----2
- 사천시 고시 제80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 ----- 3
- 사천시 고시 제81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-----4
- 사천시 고시 제82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-----5
- 사천시 고시 제83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-----6
- 사천시 고시 제8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-----7
- 사천시 고시 제8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 -----8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사 천 시 공 보

제 659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78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4. 2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 : 제2019-12호
2. 점용·사용 허가 연월일 : 2019년 11월 5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
 - 부잔교 설치(조종면허시험업무와 수상레저사업)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사천시 대포동 457-12번지선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330㎡(직접 225, 간접 : 105)
6. 점용·사용의 기간(변경)
 - 당초 : 2016. 10. 31. ~ 2019. 10. 30.(4년간)
 - 변경 : 2019. 10. 31. ~ 2022. 10. 30. (4년간)
7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(사)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남지부 외 1인
 - 주 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160 3층

사 천 시 공 보

제659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79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, 같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4. 2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 : 제2019-13호
2. 점용·사용 허가 연월일 : 2019년 12월 31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주택단지 형성을 위한 포락지 복구공사
4. 점용·사용의 장소(공사장소)
 -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20-27번지 외 1필지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1,888㎡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9년 12월 31일 ~ 2049년 12월 30일(30년간)
7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문두순
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새들말로 22번길 9-3
8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
 - 신고번호 : 제2020-1호
 - 공사기간 : 2020. 04. ~ 2022. 03.
9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: 2020. 03. 19.
10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 - 점용·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실시계획 승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 659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80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4. 2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 : 2020-1호
2. 점용·사용 허가 연월일 : 2020년 1월 22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(변경)
 - 당초 : 어촌체험객 체험객선박의 입출항 및 접안을 위한 부잔교 설치
 - 변경 : 체험객선박,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접안 및 입출항을 위한 부잔교 설치
4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사천시 대방동 728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(변경)
 - 당초 : 105㎡(직접 63, 간접 42)
 - 변경 : 444㎡(직접 66, 간접 378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19. 04. 03. ~ 2034. 04. 02. (15년간)
7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성 명 : 황금빛노을바다 영어조합법인
 - 주 소 : 사천시 군영숲길 34-8

사 천 시 공 보

제 659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81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, 같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4. 2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 : 제2020-2호
2. 점용·사용 허가 연월일 : 2020년 03월 24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사천 예수화전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공사의 토공사중 사토운반을 위한 물량장 설치
4. 점용·사용의 장소(공사장소)
 -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1,834㎡(직접 226㎡, 간접 1,608㎡)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0년 03월 31일 ~ 2022년 03월 30일(3년간)
7. 점용·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(주)상희토건
 - 나. 주 소 :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82, 3층 303호
8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
 - 승인번호 : 제2020-2호
 - 공사기간 : 2020. 04. ~ 2020. 05.
9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일자 : 2020. 03. 24.
10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 조건
 - 점용·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실시계획 승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 659 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82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, 같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04. 02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0-1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0년 03월 17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마도 부잔교 설치공사
4. 점용·사용의 장소(공사장소)
 - 사천시 마도동 79-13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320㎡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0년 03월 17일 ~ 2035년 03월 16일(15년간)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도시재생과장)
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- 신고번호 : 제2020-1호
 - 공사기간 : 2020. 03. ~ 2020. 12.
9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20. 03. 30.
10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 659 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83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, 같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4. 2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0-2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0년 03월 17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마도 부잔교 설치공사
4. 점용·사용의 장소(공사장소)
 - 사천시 마도동 79-11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333㎡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0년 03월 17일 ~ 2035년 03월 16일(15년간)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도시재생과장)
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- 신고번호 : 제2020-2호
 - 공사기간 : 2020. 03. ~ 2020. 12.
9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20. 03. 30.
10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 659 호

사천시 고시 제2020-84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, 같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4. 2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0-3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0년 03월 17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마도 부잔교 설치공사
4. 점용·사용의 장소(공사장소)
 - 사천시 마도동 79-10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411㎡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0년 03월 17일 ~ 2035년 03월 16일(15년간)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도시재생과장)
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- 신고번호 : 제2020-3호
 - 공사기간 : 2020. 03. ~ 2020. 12.
9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20. 03. 30.
10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 659 호

사천시 고시 제 2020-85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, 같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0. 4. 2.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 : 제2020-4호
2. 점용·사용 승인 연월일 : 2020년 03월 17일
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 - 해안둘레길 조성(목재데크)
4. 점용·사용의 장소(공사장소)
 -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5-1번지선 공유수면
5. 점용·사용의 면적 : 298㎡
6. 점용·사용의 기간 : 2020년 03월 17일 ~ 2035년 03월 16일(15년간)
7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 - 가. 성 명 : 사천시장(도시재생과장)
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로 77
8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 - 신고번호 : 제2020-4호
 - 공사기간 : 2020. 03. ~ 2020. 12.
9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20. 03. 30.
10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- 점용·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